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지원 안내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개요

- 내국인이 지출하거나 지출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신청기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연도 중에 언제라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우편·방문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개요

-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할 때 등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공제가 가능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간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컨설팅조회
- 우편·방문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 신청 혜택

- 심사내용 및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문서비스 제공
- 추후 심사 및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중소기업 세정지원

◆ 중소기업이란?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 업 종 :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을 것
- 규모 :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규모 이내
- 독립성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졸업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법령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중소기업 주요 세정지원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부유예

- 납부기한 등 연장 최장 9개월, 압류·매각의 유예 최장 1년
- 재기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 지급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 조사대상 선정 제외

- 수입금액 1천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일자리를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한 중소기업

영세납세자지원단 설치 운영

-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

* 신청방법 : 홈택스 > 상담제도 >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

다시 도약하는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3

www.nts.go.kr
National Tax Service

법인세 신고안내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126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을 한번에!



대전지방국세청

NTS Daejeon Regional Office

2023년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 온라인 도움자료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안내 동영상 및 주요세법개정 내용, 신고시 유의사항 등 게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유의사항



* QR코드 스캔시 바로가기 가능

◆ 신고·납부기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전자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

◆ 편리한 세금납부

- ◆ 다양한 납부방식 전자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카드 가능
- ◆ 국세계좌 전자납부번호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 ◆ 신용카드 홈택스·인터넷지로 / 은행 CD·ATM기

◆ 세액분납

-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납부기한 연장

- ◆ 경영상 현저한 손실 등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택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④ 신고본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 ① 손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④ 신고본 납부기한 연장신청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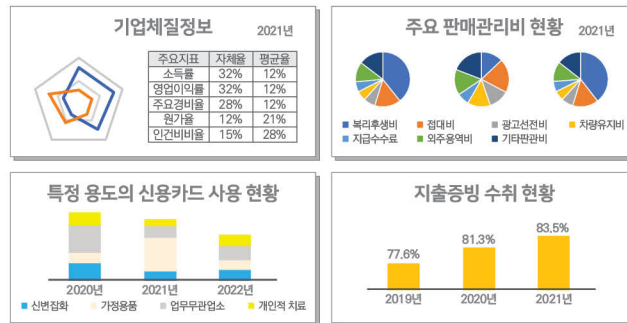
◆ 바로제공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가장대리인 및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열람 가능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법인별 분석, 신고 참고자료 등
-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제공



◆ 모바일 안내 서비스

- 모바일 안내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주요항목은 대표자에게 모바일 제공



맞춤형 절세 팁

◆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안내

안내 개요

-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통합(「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16% 공제

공제대상 사업자 및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주점업 등) 및 부동산임대·공급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공제대상 자산

- ①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대상 (일부자산* 제외)
* 건물 구축물 등 조특법 별표1 규정
- ② 종전 특정시설*, 업종별 사업필수자산
* 연구·인력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전 시설 등
- ③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2년(건축물 등 5년) 경과 전, 해당자산 처분시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안내

안내 개요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연간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 *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400~1,300만원) 공제

공제대상 사업자 및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호텔업, 주점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

사후관리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